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12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8월 26일

발 의 자: 서울특별시의회 의장

1. 제안이유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4항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(2025.7.28.)한 주민조례청구(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)를 발의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4조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2.6%에서 27%로 변경
- 나. 제8조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·측정단위(별표 1) 및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(별표 2) 추가 및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100분의 22.6”을 “100분의 27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② 일반관리비의 측정단위란 중 “인구수”를 “인구수 또는 생활인구수 중 큰수”로 한다.

별표 1 제4호 ⑤ 문화체육비의 측정단위란 중 “인구수”를 “인구수 또는 생활인구수 중 큰수”로 하고, “문화지수”를 신설한다.

별표 1 제7호 ⑬ 보건위생비의 측정단위란 중 “인구수”를 “인구수 또는 생활인구수 중 큰수”로 한다.

별표 1 제11호 ⑮ 인건비의 측정단위란 중 “자치구산하기관근로자수”를 신설한다.

별표 2 제2호의 측정단위란 중 “인구수”를 “인구수 또는 생활인구수 중 큰 수”로 하고, 같은 호 수치산정기준란 중 “「주민등록법」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인구수 및 외국인 등록수”를 “「주민등록법」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인구수 및 외국인 등록수 또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일일 평균 생활인구수 중 큰수”로 한다.

별표 2 제5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고, 같은 표에 제5호 및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문화지수	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도서관수, 국가유산수, 3년 이상 개최된 지역축제수	개
23자치구산하기관근로자수	자치구 산하 도시관리공단, 문화재단, 복지재단 소속 근로자수	명

별표 2 제22호의 수치산정기준란 중 “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”를 “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</u> 제4조(조정교부금의 재원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<u>100분의 22.6</u>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. ③ (생략)	<u>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</u> 제4조(조정교부금의 재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100</u> <u>분의 27</u>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 <개정안>

측정항목·측정단위 분류표(제8조제2항)

분야	측정항목	측정단위
1. 일반공공행정	① 지방의회비	지방의원수
	② 일반관리비	인구수(변경) ⇒ 인구수 또는 생활 인구수 중 큰수
		행정구역면적
2. 공공질서및안전	③ 안전관리비	사업체종사자수
		세대수
3. 교육	④ 교육지원비	학생수
4. 문화및관광	⑤ 문화체육비	인구수(변경) ⇒ 인구수 또는 생활 인구수 중 큰수
		<신설> 문화지수
5. 환경보호	⑥ 환경보호비	사업체종사자수
		하수도연장
6. 사회복지	⑦ 일반복지비	세대수
	⑧ 기초생활비	저소득취약계층
	⑨ 보육사업비	영유아수
		공공보육시설정원
	⑩ 노인복지비	노인수
	⑪ 아동복지비	아동청소년수
7. 보건	⑬ 보건위생비	인구수(변경) ⇒ 인구수 또는 생활 인구수 중 큰수
		등록장애인수
8. 농림해양수산 · 산업·중소기업 · 과학기술	⑭ 산업경제비	사업체종사자수
9. 수송 및 교통	⑮ 도로관리비	도로시설물연장
		도로면적
		미개설도로면적
	⑯ 교통관리비	자동차대수
10. 국토및지역개발	⑰ 지역개발비	도시계획면적
		녹지대면적
		하천연장
11. 기타	⑱ 인건비	공무원수(확대)
		<신설> 자차구입하기민근로자수

[별표 2] <개정안>

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(제8조제2항 관련)

측정단위	수 치 산 정 기 준	단위
1.지방의원수	「공직선거법」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	명
2.인구수(변경) ⇒ 2.인구수 또는 생활인구수 중 큰수	「주민등록법」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인구수 및 외국인 등록수(변경) ⇒ 「주민등록법」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인구수 및 외국인 등록수 또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일일 평균 생활인구수 중 큰수	명
3.행정구역면적	「지방자치법」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관할구역 면적	km ²
4.학생수	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수	명
<신설> 5.문화지수	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도서관수, 국가유산수, 3년 이상 개최된 지역축제수	개
6.사업체종사자수	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사업체종사자수	명
7.하수도연장	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관거, 암거, 개거, U형 측구의 연장	m
8.세대수	「주민등록법」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세대수	세대
9.저소득취약계층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	명
10.영유아수	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0세-5세 인구수	명
11.공공보육시설정원	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	명
12.노인수	「주민등록법」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자치구의 65세 이상 인구수	명
13.아동청소년수	공식적으로 조사된 최근 통계에 의한 자치구의 6세-24세 인구수	명
14.등록장애인수	「장애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수	명
15.도로시설물연장	「도로법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로서 교량, 고가차도, 보도육교, 지하보차도, 일반터널의 연장	m
16.도로면적	「도로법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면적	m ²
17.미개설도로면적	「도로법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로시설로서, 자치구청장이 공부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미포장도로 및 미개설도로의 면적	m ²
18.자동차대수	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치구에 등록된 자동차대수	대
19.도시계획면적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수립 면적	km ²
20.녹지대면적	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일반녹지, 분리대, 수벽, 수림대 등 녹지대 면적	m ²
21.하천연장	「하천법」에 의한 당해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의 길이	m
22.공무원수(확대)	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(확대) ⇒ 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수	명
<신설> 23.자치구산하기관근로자수	자치구 산하 도시관리공단, 문화재단, 복지재단 소속 근로자수	명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4조(조정교부금의 재원)제2항	○	재원 비율변경(100분의 22.6→27)에 의한 추가재정소요 발생 ⇒ 총 4,151,876,960천원 소요(연평균 830,375,392천원)

※ 별표의 측정항목·측정단위 분류표(자치구별 배분산정)는 **총 금액**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추계대상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조정교부금 추가 지급비용(안 제4조제2항)

나. 전제

- **(교 부 금)** 2025년 보통세 기준 **100분의 27**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제(매년 동일 전제¹⁾)
⇒ 2025년 기준 추가 발생(재정기준선 외 추가소요액)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추계
- **(발생기간)** 2026년부터 비용 발생, 매년 소요, 추계기간(2026~2030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 전제
- **(미 고 려)**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**5년**(2026년~2030년)

라. 방법

- **(논의추계)** 서울시 행정국 문의 및 2025년 서울시 예산서·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

1) [산정 구조적 특성 고려]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를 기준으로 재원을 산정하므로 매년 보통세 징수액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져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징수액을 추정하기 어려움(이에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 파악용임)

⇒ 참고로 서울시 <중기지방재정계획>을 활용하여 산출하려 하였으나 최근들어 급변하는 세입여건(지정학적 리스크, 주요국 간 무역분쟁 등)에 따라 **징수규모가 매년 크게 달라지는 등 정합성 오류가능성이 높으므로** 추계 객관성 측면에 이를 토대로 추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활용하지 않음

<최근 3년간 서울시 본예산 기준 조정교부금 현황>

(단위 :천원)

구분 \ 연도	2022년	2023년	2024년
서울시 <조정교부금>	3,812,308,120	4,167,858,240	4,171,745,184

주 : 최근 3년간 조정교부금 본예산 기준 추이를 살펴보면, 총액은 증가세를 보이거나 증가율은 일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매년 보통세 징수액에 따라 달라짐을 파악할 수 있음

자료 : 해당년도 서울시 <조정교부금> 사업설명서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비용 = **4,151,876,960천원**(연평균 830,375,392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조정교부금 추가재정소요액 (안 제4조제2항)	830,375,392	830,375,392	830,375,392	830,375,392	830,375,392	4,151,876,960
	소계(a)	830,375,392	830,375,392	830,375,392	830,375,392	830,375,392	4,151,876,96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830,375,392	830,375,392	830,375,392	830,375,392	830,375,392	4,151,876,960

주 : 2025년도 서울시 행정국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추계

4. 덧붙이는 의견

- **[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변동가능성]** 조정교부금 산정구조 특성상 2차년도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, 당해 징수되는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특히, 보통세 수입의 주된 세목인 **취득세**는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대외적 경제여건과 부동산 정책변화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매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조정교부금 추가 지급비용(안 제4조제2항)

2. 세부 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**4,151,876,960천원**(연평균 830,375,392천원)

$$\text{산출방식} = \sum_{i=1}^5 (\text{조정교부금 연평균 추가 재정소요액})_i$$

i = 비용추계 연차(2026년~2030년)

- 2) [서울시 주요세목] 취득세는 서울시 지방세 수입(2025년 예산액 기준) 중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주요세목으로 연간 5~6조 규모임

나. 연평균 비용 = 830,375,392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현행(22.6%)	개정안(27%)	증가액
보통세	당해연도분 ³⁾	4,229,570,338	5,053,026,510	823,456,172
	지난년도분 ⁴⁾	35,539,630	42,458,850	6,919,220
소 계(A)		4,265,109,968	5,095,485,360	830,375,392
레저세분 ⁵⁾ (B)		19,959,662	19,959,662	-
지역자원시설세분 ⁶⁾ (C)		3,054,120	3,054,120	-
합 계(A+B+C)		4,288,123,750	5,118,499,142	830,375,392

주 : 해당 규정의 재원비율 변경은 보통세(A)를 기준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에만 영향을 미침

※ 합계(A+B+C)는 총체적 규모 파악용임

자료 : 2025년 본예산 기준

- 3) [산출방식] 2025년도 서울시 보통세 당해연도 예상액 18,714,913,000천원 × 교부율(현행 및 개정안)
⇒ 서울시 지방세 세목(10개) 중 목적세(지방교육세, 지역자원시설세) 및 레저세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세목(취득세, 주민세, 자동차세, 레저세, 담배소비세, 지방소비세, 지방소득세)의 예상액
- 4) [산출방식] 2025년도 서울시 보통세 지난년도 예상액 157,255,000천원 × 교부율(현행 및 개정안)
⇒ 참고로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(12월말)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수납되었을 때에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(예산과목 100지방세수입-110지방세-113지난년도 수입)

과목구분				설 정
장	관	항	목	
100 지방세수입				
	110 지방세			
		111 보통세		
		111-01	취득세	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수입
		111-02	등록면허세	"
		111-03	주민세	"
		111-04	재산세	"
		111-05	자동차세	"
		111-06	레저세	"
		111-07	담배소비세	"
		111-08	지방소비세	"
		111-09	지방소득세	"
		112 목적세		
		112-01	지역자원시설세	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수입
		112-02	지방교육세	"
		113 지난년도 수입		
		113-01	지난년도 수입	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

자료 :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)

- 5) [산출방식] 2025년도 서울시 레저세 예상액 99,798,310천원 × 20%

지방재정법

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 ④ 시·도지사는 「지방세법」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(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)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, 승마투표권 등(이하 “승자투표권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시·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·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- 6) [산출방식] 2025년도 서울시 지역자원시설세 예상액 4,926,000천원 × 62%
⇒ '24. 4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(징수교부금 제외 시 62%) 교부 신설